

2023년도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

(2023.1.1.~2023.12.31.)

2024. 1.



2023년도 회계감사 결과 보고

규약 제28조(소집 및 기능)에 의거 2023.1.1.~2023.12.31.에 대한 2023년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개요

가. 회계연도 : 2023. 1. 1. ~ 2023. 12. 31.

나. 감사일 : 2024. 1. 17.

다. 감사장소 : 노동조합 사무실

라. 감사위원 : 정진원

○ 감사위원 2명 중 1명 퇴직에 따라 본부 위원 1명이 감사 실시

2. 감사내용

가. 예산과 수입 및 지출 적정여부

나. 지출 원인행위 적정여부

다. 전표 처리 및 장부기록 적정유지

라. 특별회계 기금 현황

3. 감사방법 및 결과

가. 감사방법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수입은 의무금과 후원금 등 기타수입으로 누락 없이 예산에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지출에 관해서는 사업계획 대비 항목별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집행내용에 대한 지출 경위와 투명성을 기준으로 입출금 현황과 지출항목에 대한 세부지출 내용과 증빙서류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음.

나. 감사결과

-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지적사항	의견
항목간 집행예산 수립 철저	○ 회계규정 제10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중앙위원회 결의를 얻은 후 전용할 수 있으나,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항목간 집행예산 수립을 철저히 하여 예산 전용 항목을 최소화하시기 바람.

- 지적사항 및 의견

지적사항	의견
활동비 효율적 집행	○ 지회 조합원 의견 수렴 등 원활한 대의원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대의원활동비 배정 기준에 대해 각 지회에 동일한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투쟁수당 집행 철저	○ 전국노동자대회 등 상급단체에서 진행되는 대정부 투쟁활동은 휴일에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참석자에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투쟁수당이 잡비에서 집행되었으나, 향후 동 수당을 집행 항목을 대외협력비에 편성하여 집행하시기 바람

4. 감사총평

- 노동조합 예산 집행행위를 노동조합 전용계좌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를 활용하고 있어 수입·지출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조합의 재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입·지출에 대하여 전표 등록 및 장부를 관리하고 있음.
- 아울러, 노동조합 예산의 수입·지출관련 지출원인행위 및 집행내역 등을 확인한 바, 예산집행의 투명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일부 항목의 경우 초과집행되었으나 전년도 지적사항인 항목간 집행예산 수립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져 집행되었다고 판단됨
 - 초과 집행된 목의 집행내역을 확인한 바, 전용된 220만원 예산 중 대내외 경조사에 따른 경조비가 3건 180만원으로 81%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3건의 경우 소액 초과집행으로 예산은 적정하게 수립·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초과집행된 예산 외 전반적으로 평균 74% 수준으로 집행된 점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됨
- 지적사항 및 의견에 대해 개선·조치하시기 바라며, 작년 한 해 동안 임금 및 제도 개선 등 조합원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위원장 이하 집행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향후 주요현안 사항 개선 및 조합원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노동조합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7일

회계감사위원 정 진 원

